

## 2) 지자체로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

| 구 분 | 면 적(㎡) |       | 구성비(%)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지 상    | 지 하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합 계 | 8,307  | 9,080 | 100.0  | 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<br>주1) 주차장은 입체적결정(창업및문화산업단지 내 지하3층에 한함), 2지구에 설치 예정인 주차장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<br>주2) 소공원 및 광장계획은 향후 2지구 세부 개발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변경 예정이며, 계획 확정시 해당 계획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 결정 예정 |
| 도 로 | 4,745  | -     | 57.1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차장 | -      | 9,080 | -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소공원 | 1,400  | -     | 16.9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광 장 | 2,162  | -     | 26.0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8.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

- 관계기관(부서)과 사전협의 후 이행

## 9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등 관계도면 : 별첨

-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## 10. 인가된 실시계획의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

- 공람기간 :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
- 공람장소
  - 서울특별시 동북권사업단 (☎02)-2133-8284)
  -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(☎02)2091-3556)
  -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기획부 (☎02)3410-7579)

## 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87호

**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
고시(경미한 변경)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호(2003.11.18.)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322호(2005.3.10.)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26호(2006.4.13.)로 정비구역지정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07-32(2007.7.12)로 구역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71호(2008.3.13)로 변경지정, 종로구고시 제2009-15호(2009.3.19.)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·구역지정변경(경미한 변경), 종로구고시 제2013-23호(2013.3.14.)로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3-76호(2013.10.24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종로구고시 제2014-35호(2014.5.15.)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(경미한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59호(2015.6.11.)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

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3호(2016.9.8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(동의문1구역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호(2017.1.12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1호(2017.3.30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40호(2017.04.20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63호(2017.5.11.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4호(2017.6.15)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7호(2017.08.3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74호(2018.05.31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0호(2018.07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된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종로구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29일  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, 유형, 위치, 면적 및 지정목적(변경)

| 지 구 명          | 유 형  | 위 치                | 면 적(㎡)    |        |           |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  | 증 감    | 변 경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의문<br>재정비촉진지구 | 중심지형 | 종로구 교남동<br>62-1 일대 | 167,844.4 | 증)29.8 | 167,874.2 | 정동사거리 접속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내 편입 |

- ※ 동의문 촉진지구 내 존치시설(도로) 면적(29.8㎡) : 정동사거리 중로 3-40 접속부  
 - 변경내용(동의문1·2·3구역 변경사항 없음)  
 ·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동사거리 접속부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촉진지구 편입(29.8㎡)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(변경없음)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없음)

4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(변경 없음)

5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: 생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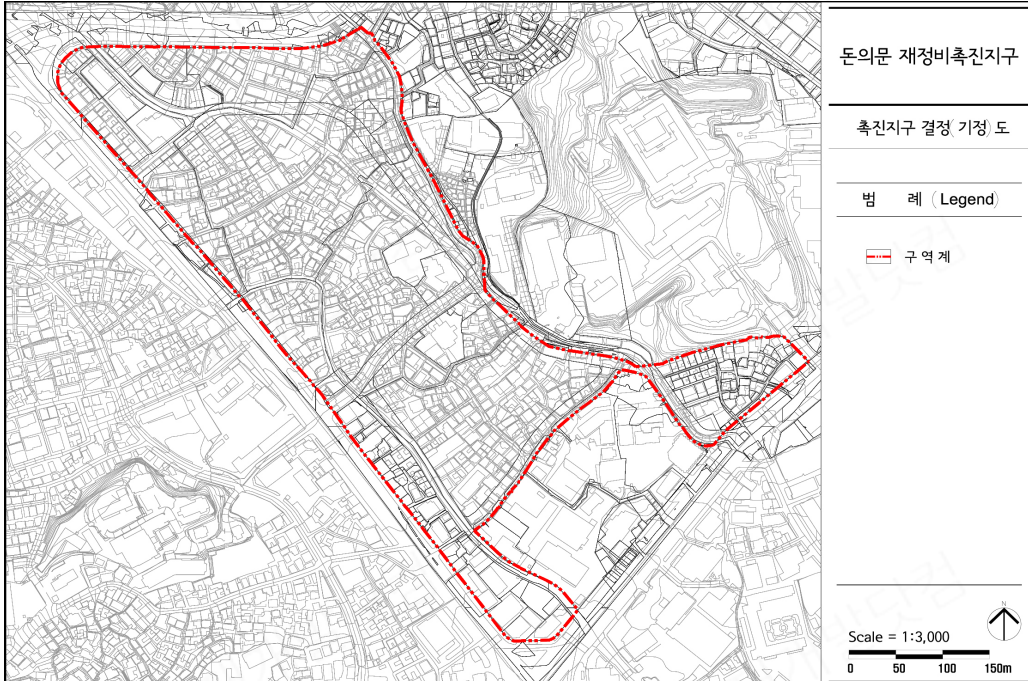
※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 02-2133-7218),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02-2148-269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6. 지형도면의 작성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지형도면

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(기정)



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도(변경)

